

고 시**서울특별시종로구 고시 제2009-55호****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구역(변경)지정**

건설부고시 제367호(1973.09.06)호로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472호(1984.08.13)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210호(2009.05.28)호로 구역변경지정 고시된 종로구 서린동 63번지 일대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009년 9월 4일

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서린구역 주차장 도시환경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구분	구역명	위 치	시행면적(㎡)	대지면적(㎡)	정비기본시설(㎡)	비고
-	서린구역 주차장	서린동 63번지 일대	1,070.6	1,070.6	-	-

3. 건축계획

구분	구역명	대지면적(㎡)	연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율(%)	층 수(지상/지하)	높이(m)	주용도	비고
기정	서린구역 주차장	1,070.6	13,000 이하	60이하	800이하	지하5층, 지상14층이하	70 이하	공공청사· 문화시설 /주차장(지 하4,5층)	-
변경	서린구역 주차장	1,070.6	13,000 이하	60이하	800이하	지하4층, 지상15층이하	85 이하	공공청사· 문화시설 /주차장(지 하1,2층)	-

4. 토지이용계획 : 변경없음

5.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6.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: 변경없음

7. 변경사유 :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공고 제 2009-13호에 의거 설계경
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비기반시설 위치, 최고높이 및 층수 변경에 따
른 정비계획 변경

8. 관계도서 열람 :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(☎731-1422)
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